



제422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상금 등 신청기한 조항 삭제〉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40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정현의원 등 17인
2. 발 의 일 : 2024. 11. 18.
3. 회 부 일 : 2024.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특별공로금·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여전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를 받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이 있어 이들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 조제2항 삭제).

Ⅲ. 검토의견

1. 보상금 등 신청기한 조항 삭제

-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금 등¹⁾ 지급신청은 현재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신청기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u>6개월</u>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 현행법 제정('04. 1. 29.)이래 동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등²⁾에게 보상금 등의 신청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총 6차례³⁾의 법률 개정이 있었음.

1) 보상금·특별공로금·공로금 및 특별위로금

2)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3) 최근 신청기한을 1년 연장(2025.4.1.~2026.3.31.)하는 내용의 동 법이 개정되어 6차례 개정이 이루어짐(2025.4.1. 시행).

[보상금 등 신청기한 연장 연혁]

구 분	제정법률 제7122호	제1차 개정법률 제7978호	제2차 개정법률 제9562호	제3차 개정법률 제12567호	제4차 개정법률 제13779호	제5차 개정법률 제16360 호	제6차 개정법률 제20542 호
제· 개 정 일	'04. 1. 29.	'06. 9. 22.	'09. 4. 1.	'14. 5. 9.	'16. 1. 19.	'19. 4. 23.	'24.12.3.
신 청 기 간 (제 10 조)	'05.2.1.~ '05.8.1. (6개월)	'06.11.1.~ '07.10.31. (12개월)	'09.4.1.~ '11.10.31. (31개월)	'14.5.9.~ '14.11.10. (6개월)	'16.1.19.~ '16.4.19. (3개월)	'19.5.24.~ '19.11.25. (6개월)	'25.4.1.~ '26.3.31. (12개월)
법 률 제 개 정 사 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 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 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 의 생활 안정 을 도모	보상대상 확대 (’95~’02년 사 이에 활동했던 특수임무수행 자까지 포함) 하면서 시행일 (06.11.1)로 부 터 1년간 신 청기간을 연장	’09.1월 말 보 상받지 못한 신청자가 176 명이고 이 중 120명은 유족 찾기 사업으로 대상자로 확인 됨	아직도 미신청 자가 있을 것 으로 판단하여 개정 추진	신청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 있어 신 청 기간을 3개 월 연장	아직 보상금 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 게 기회를 주 고자 이미 만 료된 보상신 청 기간을 6 개월 연장	미신청자 신 청기회를 주 고자 신청기 간 연장(1년)

※ 자료 : 국방부

□ 그 결과 2024년 11월 30일 기준 총 6,715명에게 7,691억 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되었음.

[법률 제정이래 보상 실적]

(’24. 11. 30. 기준)

신청건수	보상 현황	
	보상인원	보상금액
11,044건 (신규 9,686, 재신청 1,358)	6,715명	7,691억 원

※ 자료 : 국방부

□ 그러나 여전히 보상금 등을 신청하지 아니한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미신청자가 존재하고 있는데,

국방부에 따르면 미신청자 규모가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약 5,500여 명으로 추정되고, 그 유족의 경우도 97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⁴⁾ 이 중 신청기한 종료 후 보상 문의를 한 인원이 410명(특수임무수행자 308명, 유족 102명)에 달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2024년 12월 3일에 신청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동 법이 개정되어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신청기한이 연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상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신청 및 보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동 기한이 만료되면 별도의 법률 개정 전까지는 보상금 신청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4)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이 신청기한 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하고 있음.

- 본적이 북한 또는 북한 연고자로 보상안내 및 유가족 찾기 제한
- 남한 연고자 중 가명, 주소 사용 등으로 인한 신원확인 불가
- 미신청 유족의 경우, 유족간 상호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보상 홍보 제한

□ 개정안은 기존의 신청기한 연장방식이 아닌 신청기한을 삭제함으로써 보상금 등에 대해 영속적으로 신청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고령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신청기회를 놓친 대상자에게 기간의 제한 없이 보상금 등이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특별한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의 의지가 표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기존의 신청기한 연장방식은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보상금 신청기회의 공백(예: 5차 개정과 6차 개정 간 약 5년 4개월 공백 발생)이 발생하는바, 개정안과 같이 신청기한을 삭제하게 되면 신청기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 다만, 일반적으로 특별보상의 입법례에서는 보상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위해 신청기한을 정해 두고 있는 점과 보상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을 설치해 인력 및 재정이 투입되는 점⁵⁾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보상지원단 인원 및 예산 사용현황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인 원(명)	22	22	21	21	21	10
보상금(억원)	35.3	45.7	122.2	159.2	22.4	2.37
기관운영비(억원)	2.6	2.3	3	2.7	2.2	1.35

<특별보상에 관한 유사 입법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공로금의 지급신청)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보상금 지급 신청의 기간) 보상금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 신청은 남북피해자에 해당된 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피해자로 결정된 때를 말한다)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재일교포 복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신청기한을 1년 연장(2025. 4. 1.~2026. 3. 31.)하는 내용의 동 법이 개정⁶⁾되어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해 추가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국방부의 미신청자에 대한 빠짐없는 발굴 노력이 전제된다면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6차례의 개정과 유가족 찾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보상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고, 현재도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여 보상할 예정인바, 신청 기간의 제한 없이 특별 보상을 할 경우, 타 보상법률과의 형평성 문제, 유사 조직의 추가 보상요구 등이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법률 제20542호, 2024.11.14. 본회의 의결, 2024.12.3. 법률 공포, 2025.4.1. 시행

기획재정부도 보상관련 국방부 소관 유사법안의 경우 모두 신청
기한을 규정하고 있고, 신청기한을 삭제할 경우 재심 청구를 허
용하고 방계혈족까지 지급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상⁷⁾
재정 소요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
장임.

문 의 처
02)6788-5308

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3.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